

2019년도 제13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8. 1.(목요일), 10: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최승수 위원(분과위원장), 강호갑 위원, 정태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27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609건(안건번호 제2019-84208호~85701호)
 - 회의결과 : 안건번호 제2019-84208호는 동영상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가 불명확한 점, 설령 동영상에 저작물성이 인정되더라도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자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동영상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나머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3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27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의 내용, 민원인 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전차 회의록 5쪽의 저작물명을 공개할 경우 권리자인 민원인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6쪽의 블로그명이 노출될 경우 이용자들이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블로그명도 비식별 처리하고, 9쪽의 해외 사이트명도 접속차단을 우회하여 접속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A 위원 :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며, 저작물명과 블로그명은 비실명 처리 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비식별 처리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저작물명과 사이트명은 비실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전번호 제2019-84208호~85701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2,609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84208호는 제목에
'☆☆☆ ☆☆☆ ☆☆☆☆☆☆☆ ☆☆/☆☆☆☆ ☆☆☆'이라고 되어있
고, 피부미용 기기를 판매하기 위한 홍보성 글임

미용기기 사진이 여러 개 첨부되어 있으며, 게시물 내 여러 개의 사
진, 영상 중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1개임

영상의 총 길이는 33분 51초이며,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어 구도에 변
화가 없고 음성도 없이 피부 관리를 하는 장면을 계속 보여줌

영상의 우측 상단에 ▲▲▲▲▲▲▲ ▲▲▲▲▲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근무하는 곳임

해당 영상은 민원인이 유튜브에 직접 올렸고,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
자가 유튜브 영상을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한 것임

- A 위원 : 저작권침해는 아니라고 생각함

- B 위원 : 개인적으로 해당 영상에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이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였는데, 이를

타인이 개인 블로그에 링크하였음

보호원에서 블로그 게시물을 조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민원인 자신이 게시자이므로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도 삭제될 것임

- C 위원 : 블로그가 심의대상 게시물을 올린 게시자의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렇다고 답변함
- A 위원 : URL을 입력해서 유튜브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렇다고 답변함
- C 위원 :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블로그 이용자가 임베디드 링크 형태로 게시한 사안이며,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여부를 떠나,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을 블로그 게시판에 임베디드 링크 형태로 올려 재생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심의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이 맞으며, 시정권고를 하고 있음
심의위원회는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정보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한편 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인 정범을 전제로 하는데,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이를 블로그에 링크하는 행위가 저작권침해를 방조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됨

- C 위원 : 유튜브에 게시한 사람은 민원인 자신이며, 민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블로그 이용자가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임베디드 링크 형태로 한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인터넷 세상에서는 링크의 자유가 있으므로 링크 행위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님
- C 위원 : 피부 시술하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각도를 잡고 조명을 설치하는 등 연출하는데 창작된 영상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만든 영상을 자신이 올린 것이므로 유튜브 영상에 저작권침해가 성립할 여지는 없음
민원인의 업로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의 링크행위가 민원인의 공중송신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음
- C 위원 : 본 건에서 유튜브 영상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아닌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게시물이 복제·전송권 침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음
- A 위원 : 강호갑 위원님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블로그 이용자가 훔쳤다고 생각해서 발언한 것으로 보임
- C 위원 : 민원인 자신이 유튜브에 올렸으므로 누구든 영상을 볼 수 있게 공중에 이용 허락한 것이라고 봐야함

블로그 이용자가 임베디드 링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유럽에서 “New Public”이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저작자가 인터넷에 업로드를 했는데 저작자가 의도했던 공중이 아닌 다른 공중에게 저작물이 제공될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다만, 본 건에서 유튜브에 올린 행위 자체가 공중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럽식의 “New Public test”를 적용하더라도 공중송신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성원영 전문위원 : 약 10년 전 하급심 판결 중 모발이식 전후의 환자 비교사진 등을 다른 성형외과 홈페이지에서 무단 사용한 사안에서, 사진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음
즉 비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하지만 저작권법을 벗어나 손해배상 등 분쟁의 해결은 심의위원회의 권한 밖의 일임
- A 위원 : 유튜브에 올린 것을 블로그 이용자가 하드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것을 블로그에 다시 올린 것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영상이 재생되도록 임베디드 링크를 설정한 것임
- B 위원 : 사건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은 저작물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불명확하기 때문에 가결하기는 어려움
저작물성 여부를 지금 판단할 필요는 없고, 링크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C 위원 : 부결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다만, 법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논리가 어려움

- A 위원 : 전문위원은 저작물성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한 것이며, 저작물성 인정이 안 된다고 확인한 것은 아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정권고의 대상은 아님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8420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19-84209호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와 해당 프로그램의 인증 키를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있는 게시판 이름이 '■■■'로 되어있고 게시물 제목은 '◇◇◇◇◇◇ ◇◇◇ ◇◇◇◇◇'이며, 게시일자는 2018. 7. 21.임
게시물 본문의 '제가 체험판 크랙만들 때 썼던 겁니다.', '링크 막혀서 새로 올립니다'는 표현에 비추어 볼 때 게시자 자신이 구글 드 라이브에 프로그램 복제물을 업로드한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인증 키 부분을 확대하여 제시하면서)인증 키는 심의대상 게시물 본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인증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보호원이 조사하여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보호원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게시물 본문에 있는 인증 키를 입력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함

- A 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C 위원 : 가결에 동의함
 다만, 구글 드라이브에 프로그램을 업로드한 사람과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이 동일인지 여부는 심의에서 중요하지 않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와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내용이 검토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A가 불법복제물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고 B가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블로그에 올리면 B가 올린 블로그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됨
 A가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고 이를 A가 다시 링크 하면 정범인 A가 한 일련의 행위는 위 사례에서 B의 링크행위보다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B 위원 :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8420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84210호는 ‘판도라TV’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게시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주면서)동영상이 올라간 게시물에 팝업 광고가 있으며, 동영상 중간 중간 광고가 재생됨

- A 위원 : 유튜브와 비슷한 성격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렇다고 답변함

- A 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 가결하는 것에 이의 없음

- C 위원 : 같은 생각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8421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 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84211호~85701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음악, 컴퓨터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영화 '맨인블랙 인터내셔널'의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영화 '맨인블랙 인터내셔널'은 2019. 6. 개봉한 영화이며, 재생화면에 한글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영화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의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영화 '스파이

더맨 파프롬홈'은 2019. 7. 개봉하여 상영 중인 영화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이른바 '캠버전'으로 보임
지난 심의안건과 동일하게 화면에 "♣♣♣♣♣.COM"이라는 사행성 사이트의 마크가 포함되어 있음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차단을 한 것으로 확인됨

- A 위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박사이트를 차단한 근거 법령에 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가 그 근거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도 동일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음

- A 위원 : 데드카피이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84211호~8570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19-84208호는 민원인이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을 링크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해당 영상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19-84209호~85701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13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3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8. 8.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호갑

위원 정태호